

### 부속서 III

#### 코스타리카의 유보목록

#### 주해

1. 부속서 III의 코스타리카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 및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코스타리카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코스타리카의 기존의 조치
    - 1) 제11.2조(내국민 대우)
    - 2) 제11.3조(최혜국 대우)
    - 3)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코스타리카가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기재된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바. **유보내용**은 조치에 대한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 유보목록에 기재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 비합치 조치의 해석에서, 그 비합치 조치 목록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비합치 조치는 그 비합치 조치가 취해진 금융서비스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이 있을 경우 그 약속에, 또는 금융서비스 장 부속서의 특정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1.9조제2항(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명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코스타리카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11.5조(국경 간 무역)와 관련하여 부속서 III에서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목록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및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비합치 조치로 작용한다.

## 부속서 III

### 코스타리카의 유보목록

#### 두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현재 공급하고 있는 법인이 코스타리카 법에 따라 설립될 예정이거나 설립된 경우,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된다.
3. 건전성 사유로 채택 또는 유지되는 조치는 제1절 또는 제2절의 유보사항으로 기재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절 또는 제2절의 유보사항으로서 기재되는 조치는 건전성 사유로 채택 또는 유지되는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4. 코스타리카는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11.9조제1항다호(비합치 조치)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법으로 제한한다: 제11.9조제1항다호는 제11.4조제1항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며 제11.4조제1항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sup>1</sup>
5. 부속서 III-가는 당사국들이 제11.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하거나, 제11.10조(예외)의 적용을 받는 특정 조치를 의미한다.

---

<sup>1</sup> 상기 제4항에 명시된 제11.9조제1항다호의 적용상의 제한과 관련하여, 제11.3조(최혜국 대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부속서 III

#### 코스타리카의 유보목록

#### 제1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1644호, 1953.9.26, 국가은행제도 기본법(Ley Orgánica del Sistema Bancario Nacional)</p> <p>법률 제4646호, 1970.10.20, 자율기관 이사회의 통합에 관한 수정법(Ley que Modifica la Integración de las Juntas Directivas de Instituciones Autónomas)</p> <p>법률 제7558호, 1995.11.3,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기본법(Ley Orgánica del Banco Central de Costa Rica)</p> <p>법률 제7732호, 1997.12.17, 증권시장 규제법(Ley Reguladora del Mercado de Valores)</p> <p>법률 제8187호, 2001.12.18, 국가은행제도 기본법(법률 제1644호) 제117조에 대한 개정 및 그 개정(Reforma del Artículo 117 de la Ley Orgánica del Sistema Bancario Nacional, No. 1644 y sus reformas)</p> <p>법률 제7107호, 1988.11.4, 공화국 금융제도 현대화법(Ley de Modernización del Sistema Financiero de la República)</p> <p>법률 제7052호, 1986.11.27, 주택금융제도 및 주택융자은행 설립법 (Ley del Sistema Financiero Nacional para la Vivienda y Creación del Banco Hipotecario de la Vivienda)</p> <p>법률 제4351호, 1969.7.11, 국민지역개발은행 기본법(Ley Orgánica del Banco Popular y de Desarrollo Comunal)</p> <p>행정부령 제28985호, 2000.10.18, 국가은행제도 기본법 제59조에 관한 규정 (Reglamento al artículo 59 de la Ley Orgánica del Sistema Bancario Nacional)</p> <p>법률 제8634호, 2008.4.23, 개발 관련 은행제도법(Ley del Sistema de Banca para el Desarrollo)</p> <p>법률 제9274호, 2014.11.12, 개발 관련 은행제도법 포괄 개정(Reforma Integral de la Ley Sistema de Banca para el Desarrollo)</p> <p>법률 제8642호, 2008.6.4, 통신일반법(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p>

<p><b>유보내용</b></p>	<p>국가는 공법상의 국영은행 및 비국영은행의 부채를 보증한다.</p> <p>당좌예금 및 저축예금 부문을 취급하는 민간은행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p> <p>가. 개발 목적의 신용 자금을 관리하는 국영 은행의 최소대출잔액이, 해당 준비금 공제 후 국내 및 외국 통화로 구성된 단기예금(30일 이하) 총액의 17퍼센트가 되도록 항상 유지한다. 예금 전체가 국내 통화만으로 구성된 경우, 그 비율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15퍼센트만 되도록 한다. 관리자 역할을 하는 국영은행 또는 은행이 민간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은 최소준비금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그러한 자금은 국내 통화의 경우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이 산정한 기본 수동금리의 50퍼센트, 또는 외국 통화의 경우 1개월 만기 리보(LIBOR)금리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예치될 것이다.</p> <p>나. 그렇지 않으면, 수동적인 또는 능동적인 기본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최소 4개의 대리점 또는 지점을 초로테가(Chorotega), 센트럴 퍼시픽(Central Pacific), 브룬카(Brunca), 애틀랜틱 우에타르(Atlantic Huetar), 그리고 노스 우에타르(North Huetar)에 설립하고, 이때 해당 준비금을 공제한 후 국내 또는 외국 통화로 구성된 단기예금(30일 이하) 총액의 최소 10퍼센트를 은행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사회가 지정한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금으로 기탁한다. 그러한 자금은 국내 통화(콜론화)로 예치하는 경우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이 산정한 기본 수동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금리를, 외국 통화로 된 자금의 경우 1개월 만기 리보(LIBOR)금리를 적용하여 예치될 것이다.</p> <p>국가 또는 그 산하 기관이 자본금의 대부분을 소유한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국영기관 및 국영기관의 성격을 띤 공공기관은 공법상 국영상업은행 및 비국영은행을 통해서만 당좌예금 및 저축예금을 예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p> <p>협동조합은행을 설립 및 운영하려면, 최소 10개의 코스타리카 협동조합이 요구된다.</p> <p>연대은행을 설립 및 운영하려면, 최소 25개의 코스타리카 연대협회가 요구된다.</p> <p>국가개발신탁[Fideicomiso Nacional para el Desarrollo(FINADE)]의 수탁인은 공공은행이며, 공공은행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p> <p>국가이동통신펀드[Fondo Nacional de Telecomunicaciones(FONATEL)]의 신탁 계약은 국가은행제도의 공공은행과 체결된다.</p>
--------------------	--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비은행 금융서비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5044호, 1972.9.13, 비은행 금융회사 규제법(Ley Reguladora de Empresas Financieras no Bancarias)
유보내용	비은행 금융회사의 동산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인하여, 비은행 금융회사는 금융리스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4351호, 1969.7.11, 국민지역개발은행 기본법(Ley Orgánica del Banco Popular y de Desarrollo Comunal)
유보내용	국민지역개발은행(Banco Popular y de Desarrollo Comunal)만이 각각의 코스타리카 법령에 따라 고용주 및 근로자가 납부한 의무부담금을 관리할 것이다.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공중으로부터 예금을 수탁 받는 금융기관)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1644호, 1953.9.26, 국가은행제도 기본법(Ley Orgánica del Sistema Bancario Nacional)</p> <p>법률 제7107호, 1988.11.4, 공화국 금융제도 현대화법(Ley de Modernización del Sistema Financiero de la República)</p> <p>법률 제5044호, 1972.9.13, 비은행 금융회사 규제법(Ley Reguladora de Empresas Financieras no Bancarias)</p> <p>법률 제4179호, 1968.8.22, 협동조합 및 국립협력개발연구원(INFOCOOP) 설립법(Ley de Asociaciones Cooperativas y de Creación del INFOCOOP)</p>
유보내용	민간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및 저축신용협동조합과 같이 코스타리카에서 공중으로부터의 예금 수탁이 승인된 금융기관은, 코스타리카 법에 따른 구성 또는 조직이 요구된다.



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증권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7732호, 1997.12.17, 증권시장 규제법(Ley Reguladora del Mercado de Valores)</p> <p>규정 제571호, 2006.5.9, 주식 공모에 관한 규정(Reglamento sobre Oferta Pública de Valores)</p> <p>국립증권거래소 주식회사 입법개요 – 주식중개인에 관한 규정(Compendio de Normativa de la Bolsa Nacional de Valores S.A. - Reglamento sobre Agentes de Bolsa)</p> <p>규정 제762호, 2008.12.19, 관리회사 및 투자금에 관한 일반 규정(Reglamento General sobre Sociedades Administradoras y Fondos de Inversión)</p> <p>규정 제801호, 2009.9.11, 증권 평가 및 리스크 평가회사에 관한 규정(Reglamento sobre Calificación de Valores y Sociedades Calificadoras de Riesgo)</p>
유보내용	<p>발행자, 또는 비거주자인 제3자의 해외 발행 주식 공모는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에 따른다.</p> <p>증권감독원[Superintendencia General de Valores(SUGEVAL)]은 코스타리카가 가입한 국제 조약 및 그 밖의 외국 증권시장 규제기관과 체결한 정보교환협약에 대한 예외사항을 정할 수 있다.</p> <p>교환대리인 자격을 취득하려면 코스타리카 국민이거나, 코스타리카에 합법적 거주지를 두어야 한다.</p> <p>뮤추얼 펀드는 다음에 투자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발행 국가 또는 국가보증을 소유한 발행자가 발행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스타리카의 것으로 인정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국가의 외화채권</li> <li>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스타리카의 것으로 인정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민간 발행사가 발행한 외화채권</li> <li>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스타리카의 것으로 인정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 적격 등급을 받은 발행사의 구조화 상품</li> <li>라. 증권 공모를 위하여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회원인 규</li> </ul>

	<p>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외국 투자 자금. 재정자금에 투자하는 경우, 미국에 등록된 자금, 통합 자금(유럽연합 발행 지침의 정의에 따른다) 또는 코스타리카 자금에 대하여 수립된 것과 동일한 부채 및 다각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재정자금 포트폴리오의 외국인 관리자가 포트폴리오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제증권감독기구 회원인 시장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금융감독원[Superintendencia General de Entidades Financieras(SUGEF)]의 감독을 받는 은행 및 코스타리카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금융기구만이 공공사업 개발 신탁의 수탁자가 될 수 있다.</p> <p>국가 증권 및 코스타리카 비은행 공공기관의 발행을 제외하고, 부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은 의무 신용등급 발행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해외 소재 발행사의 신용 등급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그 자회사가 코스타리카의 것으로 인정한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할 수 있다.</p>
--	---

6.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8653호, 2008.7.22, 보험시장 규제법(Ley Reguladora del Mercado de Seguros)  법률 제12호, 1924.10.30, 보험공사법(Ley del Instituto Nacional de Seguros)
유보내용	보험 회사 및 재보험 회사를 제외하고, 법인 설립이 요구된다.  비차별적 조건에 따라, 대표 사무소의 영업 및 관측 행위는 금지된다.  국가는 보험공사[Instituto Nacional de Seguros(INS)]의 보험 관련 활동을 보장한다.

## 제 2 절

7.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모든 하위분야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코스타리카는 자국 내에서 은행 또는 보험회사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코스타리카 내 설립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코스타리카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서명되는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부록 III-1

### 제11.2조 또는 제11.4조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1.10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 조치

제11.10조(예외)에 따라, 코스타리카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제11.10조(예외)를 저해함이 없이, 코스타리카가 한국의 부록 III-1에 규정된 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조치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자국의 법령에서 채택 또는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도 제11.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 또는 관련 법의 수정, 개정, 또는 변경은 원래 조치의 취지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1.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